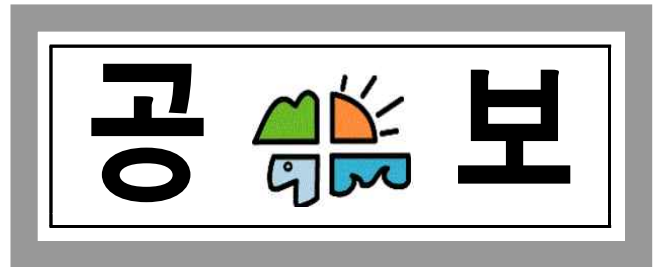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81호 2023년 7월 28일(금)

조 례

-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6
-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2
-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17
-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 27
-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30
-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35

규 칙

-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0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28호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포진”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B02)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예방접종 실시기관”이라 함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속초시 소재 보건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

족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1. 접종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50세 이상 취약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와 백신 금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지원 대상자별 한 차례에 한하여 무료로 실시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② 그 밖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중복제외)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환수) ① 시장은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비용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

신 청 인 (접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 호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신청 예방접종 ☐ 대상포진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3년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29호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제2의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
3.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관련 지원
 2. 의료관련 지원
 3. 주거관련 지원
 4. 교육관련 지원
 5. 폭염·월동 대책비
 6. 해산(解産) · 장제(葬祭)비
 7. 명절 · 연말 위문금품
 8.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그 외 지원 수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신청자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30호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로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수익계약)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수익 허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 활동
2. 지역홍보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활동
3. 주민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마을 환경개선 활동
4. 소득,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4조제1항 중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31호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레르기 질환”이라 함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식품 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안심학교”라 한다)”이라 함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교육·홍보)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안심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알레르기 질환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
3.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료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아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하의 유아
2. 의사로부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질병·사인에 관한 표준분류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유아
 - 가. 아토피성 피부염(L20)
 - 나. 천식(J45) 또는 천식 지속 상태(J46)
 - 다. 알레르기성 비염(J30)
 - 라.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혈액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 비용

2. 알레르기 질환 예방·치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물품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보호자, 법정대리인)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보호자, 법정대리인 명의 통장 가능)으로 검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레르기 질환 혈액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대 상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신 청 내 용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내용					
청구금액	금	원	입금계좌 내역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 기재 사항 중 거짓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 지급 시 환수 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알레르기 질환 혈액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 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에 따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알레르기 질환 혈액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 진료 증빙서류 (알레르기 질환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 3.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5. 진료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6. 통장 사본 ※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번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알레르기 질환 혈액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알레르기 혈액검사 지원사업 수행 및 관련 정책 연구·개발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학교명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32호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사 관련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신혼부부”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부부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사실혼 포함)를 말한다.
2. “검진비 지원”이란 예비·신혼부부·사실혼부부(이하 “예비·신혼부부”라 한다)의 건강한 임신을 위해 실시한 난소기능검사·정액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예비·신혼부부 검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속초시

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
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3.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거일이 1년 이상 5년 이내로 확인된 사실혼 부부

제4조(지원항목)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연 1회 부부합산 최대 20만원으로 한다.

1. 정액검사
2. 난소기능검사(AMH)
3. 그 밖에 시장이 난임 진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5조(지원절차)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검진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2.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이력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3. 청첩장 또는 결혼식장 계약서(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4. 통장사본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국가 및 타시·군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검진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남)	성 명		속초시 거주기간		생 년 월 일				
	주 소				휴대전화				
신청인 (여)	성 명		속초시 거주기간		생 년 월 일				
	주 소				휴대전화				
진료 내역	검사구분	남자	검사항목	정액검사		유 / 무			
		여자		난소기능검사		유 / 무			
신청금액		(영수증 금액 작성) (원)				남	원		
						여	원		
급여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비·신혼부부 검진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초시보건소장 귀하									
담당자 검토의견		지급가능금액 (원)			담당자 (서명)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이력 포함) 및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혼 증명서류 단,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2.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부담총액 포함) 3. 청첩장 또는 결혼식장계약서(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4. 통장사본 ※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조 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번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행정정보공개 동의 시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예비·신혼부부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속초시 거주기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예비·신혼부부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33호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행사”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사”를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로, “기념품 등”을 “시상금이나 기념품, 상품권, 이모티콘 등 경품”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품 등 제공 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선정방식	1명당 제공액수 한도	연간 운영 횟수
콘텐츠 공모전	참여자	추첨이나 심사	300만원 이하	3회 이내
이벤트 참여	참여자	선착순이나 추첨	5만원 이하	12회 이내

※ 비 고

1. “이벤트 참여”란 시가 운영하는 매체를 통하여 각종 행사나 축제 또는 시정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해 설문조사, 투표, 댓글, 구독, 추천, 공유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1명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참여 행사에서 추첨이나 심사 또는 선착순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34호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속초소식」으로 한다”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명예기자) ① 시장은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발굴, 취재(사진촬영 포함), 작성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명예시민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명예기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상금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명예기자, 일반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하고 채택된 기사 등에 대한 원고료
2. 그 밖에 시정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퀴즈,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선정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35호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36호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속초시 지역에서 발생하는”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보험기관과 계약으로 체결하는 보험을”을 “보험기관과 계약으로 체결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험회사를”을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37호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② 시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양도·대여 금지) ①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가 분실·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 교통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 및 정산 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 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신청서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성별	남 · 여	연락처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구분	1. 신규 () 2. 재발급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 수수료 : 원)					
	1. 본인 () 2. 대리인 () ※ 대리인 위임장 작성(서식 하단)					

본인(대리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서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 발급관리	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 사용자 등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손실요금 지급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운송사업자	손실요금 청구	교통카드 사용내역	5년
	취급을 위탁 받는 자 (수탁업체)	업무내용	보유기간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교통카드사	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사용정보 관리	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업무 위탁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어르신 교통카드 이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업무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임장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관계	
	주소			

※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교통복지카드 부정 사용 시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38호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시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 방문 및 현장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이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하거나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552호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보상금 지급”을 “보상금 등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9조”를 “제11조”로, “원고 보상금”을 “원고료 및 상품권, 기념품 등”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속초시 시정소식지 원고료 등 지급기준

(제2조 관련)

구 분	작성자	원고료 등	비 고
독자투고 (글)	일반인	30,000원	1건당, 5매 내외
독자투고 (시·만화·만평 등)		50,000원	1건당
명예시민기자 (글)	명예시민기자	100,000원	1건당, 사진 포함 10매 내외
명예시민기자 (사진)		100,000원	1건당, 30~50장 이내, 저작권은 속초시에 귀속됨
전문기고 (칼럼, 일러스트, 카툰, 사진 등)	전문가	150,000원	1편당
독자의견, 일상사진 참여, 이벤트·퀴즈 참여, 설문·만족도조사 참여 등	참여자(추첨)	20,000원 이하	1건당

비고

1. 전문가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의 지급대상에 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함.
2. 매수는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함.
3. 원고료 지급기준은 게재크기 및 형식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